

의안 번호	1521	〔울산광역시 중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	---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 2019. 2. 1.(금)
- 나. 제출자 :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 다. 위원회 회부일자 : 2019. 2. 1.(금)
- 라. 위원회 심사일자 : 2019. 2. 15.(금)

2. 제안설명 요지(복지경제국장 김영성)

가. 제안이유

- 상위법령인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은 녹색제품의 구매의무만 규정하고 있을 뿐 그 범위에 대한 내용은 없는바, 상위법령에서 사용된 용어에 대해 조례에서 해석규정을 두는 것은 법령의 의미가 축소되거나 확대될 수도 있어, 현행 조례의 불필요한 규제와 법률 체계의 모순을 바로잡고 그 의미를 명확하게 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녹색제품 구매 의무 기관 확대(안 제4조)
- 근거 없는 위원회 운영 규정 삭제(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 상위법령 위배되는 조문 삭제(안 제11조, 안 제12조)

다. 근거법규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 제6조, 제8조, 제11조, 제15조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0조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20조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유경달)

-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규정에 근거하여

- 현행 조례의 불필요한 규제와 법률 체계의 모순을 바로잡고 그 의미를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데 있음.
- 조례 개정에 대한 제반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다만, 상위법 관련 규정을 검토한 바, 조례안 제11조 구매의무 조항 삭제는 본 조례의 개정 취지에 불 부합하므로 제11조 수정이 필요함.

4. 심사결과 : 수정가결

5. 수정사항 : 따로 붙임

울산광역시 중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개 정 안	수 정 안	비 고
<삭 제>	<삭 제>	<p><u>제11조(구매의무) 제4조에 따른 적용대상 기관의 장은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녹색제품을 구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u>1.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의 품목에 녹색제품이 없는 경우</u> <u>2. 녹색제품의 안정적 공급이 불가능한 경우</u> <u>3. 녹색제품의 현저한 품질저하 등의 이유로 구매목적의 달성이 어려운 경우</u> <u>4. 장애인복지법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우선구매 규정의 이행을 위하여 녹색제품외의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u> <u>5. 그 밖에 긴급한 수요의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녹색제품의 구매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u> 	

근거법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한 책무) ① 공공기관의 장은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의 수립·시행, 자료조사, 교육·홍보 및 인력양성 등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녹색제품의 생산과 품질향상 및 녹색제품에 사용되는 원료나 부품에 대한 녹색제품의 사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민은 환경친화적인 소비생활을 위하여 녹색제품을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의무) 공공기관의 장은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녹색제품을 구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의 품목에 녹색제품이 없는 경우
2. 녹색제품의 안정적 공급이 불가능한 경우
3. 녹색제품의 현저한 품질저하 등의 이유로 구매목적의 달성이 어려운 경우
4. 장애인복지법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우선구매 규정의 이행을 위하여 녹색제품외의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5. 그 밖에 긴급한 수요의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녹색제품의 구매가 어렵다고 당해 공공기관의 장이 판단하는 경우

제8조(녹색제품의 구매이행계획) ① 공공기관의 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구매지침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시작 후 2개월 이내에 당해 회계연도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이하 "이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공표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이행계획을 수립·공표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

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고, 시·도지사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이행계획을 종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녹색제품 구매촉진 등) 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또는 시·군·구는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조례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녹색제품 의무구매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녹색제품 대상품목외의 품목에 대한 녹색제품 판단기준의 설정·운영
 3. 그 밖에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 시·도 또는 시·군·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녹색제품의 구매촉진 지원 등) ① 정부는 녹색제품의 구매 촉진에 기여하는 사업자·관련단체 등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한 정보제공
2.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지원
3. 녹색제품의 국내·외 판매 지원
4. 국내·외 녹색제품 관련 인증획득 지원
5. 녹색제품의 생산·유통·판매자금 지원
6. 녹색제품의 생산·유통을 촉진하기 위한 기업 간 기술이전 지원
7. 녹색제품의 품질향상 지원
8.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동화사업 지원
9. 녹색제품의 홍보·교육 지원
10. 그 밖에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② 정부는 녹색제품의 구매실적이 우수하거나 구매촉진에 기여한 공공기관·사업자 및 관련 단체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5조의3(자발적 협약의 체결) ① 환경부장관은 녹색제품의 생산·유통·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녹색제품 생산업체·유통업체·구매업체 등 또는 이

들로 구성된 단체와 협약(이하 "자발적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자에게 그 자발적 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자발적 협약의 목표·이행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